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



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2. 4. 2020고합7]

## 【전문】

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.

[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]

피고인을 벌금 10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 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